

### Ⅲ. EU Solvency-II Project

#### 1. Project의 주요 업무

- EU는 2005년까지 금융시장의 통합을 목표로 추진중인 “금융 시장 제도정비 5개년 계획(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 : FSAP)”의 일환으로 “Solvency-II Project”를 추진함
- EU차원에서 수행중인 “Solvency-II Project”는 EU의 지급여력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2001년 5월부터 두 단계로 진행중임

단 계	주요 업무
Phase- I (2004년초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평가, 투자규제,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관련 주요 이슈의 검토</li> <li>· 금융권간 조화를 위하여 "Basel II"의 보험권 적용가능성 검토</li> <li>· 최종적으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설계</li> </ul>
Phase-II (2004년부터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hase- I”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체계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검토</li> <li>· 지침, 규정, 해석 등 제·개정</li> </ul>

- 현재 "Phase-II"를 통하여 부채평가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작성중에 있으며, 2008~2009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이미 완료된 “Phase- I”의 결과에 대하여
  - 현재 EU 지급여력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설계시의 고려사항과
  -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Pillar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 Phase- I 결과 : 설계시 고려사항

### □ “포괄적 지급여력제도” 구축

- 유럽 보험사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작성된 “Sharma 보고서 (<별첨-2> 참조)”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한 재무적 평가로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 한계가 있으며,
  - 리스크와 연관된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감독당국 검토 (정성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함
- 따라서 EU는 “포괄적인 지급여력제도<sup>3)</sup>”를 “Solvency II”의 지향점으로 삼으며,
  - 2006년 적용 예정인 “은행권의 신바젤 협약(Basel-II)”의 체계를 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기로 함

#### <보험권에 적용가능한 3-Pillar 접근법>

Pillar- I : 재무평가	Pillar-II : 감독 검사	Pillar-III : 시장규율
· 일정수준 이상의 지급 여력금액을 요구	· 내부 리스크관리에 대한 정성평가	· 공시 확대를 통하여 시장에 의한 통제를 유도

- 3) “포괄적 자기자본규제”라 함은 자산과 부채평가로 산출된 지급여력 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단순 비교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보험회사의 내부관리 및 의사결정과정의 건전성과 미래 재무상태 추정치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개념임, 요약하면 “Pillar- I”에서는 RBC(Risk Based Capital)식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제시하고 “Pillar- II”의 정성평가를 통하여 현재 캐나다, 미국 및 영국 등에서 도입 혹은 도입예정인 RAS(Risk Assessment System)식 감독체계를 구현하는 방식임

## □ 리스크가 고려된 지급여력제도 구축

- 대차대조표(자산/부채)에 내재된 리스크가 반영된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하기로 함
  - EU의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식의 문제점은 보험사별 자산/부채 리스크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임
  - 따라서 EU 이외의 국가에서 적용중인 **RBC**를 도입하기로 함
  
- 그러나, “공식기준 RBC<sup>4)</sup>” 역시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므로,
  -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본요구량을 산출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리스크관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내부모형의 사용을 지급여력제도에 포함**시키기로 함
  - 다만,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통일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식기준 RBC”와 병행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함
  
-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계약준비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본이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부채평가 방법**이 “지급여력제도”의 완결성 확보를 위한 선결 조건임(<별첨 3> 참조)
  - 따라서, 부채평가 방법 및 규모에 대하여 EU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제정하기로 함
  - 다만, 부채평가방법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Phase-II”에서 논의하기로 함

---

4) RBC제도의 대부분은 지급여력기준금액을 “대리변수×리스크계수” 형태의 공식으로 산출하고 있음, 예를 들면 미국 RBC제도의 자산리스크 중 비관계사 보통주는 “주식의 장부가×0.40%”로 계산함

□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역할 확대 및 구분

- 현행 EU의 지급여력제도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시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수단만이 존재함
- 따라서 지급여력 수준에 따른 “단계별 시정조치” 구축으로 인한 “조기경보” 역할의 강화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파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제도를 설계하기로함

<요구자본<sup>5)</sup>의 단계별 역할 및 산출방식>

역 할	요구자본 수준 및 산출방식
시장참여 제한 조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여력이 동 조치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파산확률이 매우 높음을 의미함</li> <li>· 감독조치수단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요구자본 산출방식은 단순하고 객관적이어야만 함</li> <li>· 현행 EU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미국 RBC의 “감독당국(Authorized) 및 강제(Mandate) 통제수준”</li> </ul>
조기경보 조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부도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경영개선이 필요한 수준임</li> <li>· 강력한 제재수단보다는 심층적인 검사와 단계적인 경영개선 조치가 필요함</li> <li>· 보험사의 내재된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므로, 공식기준의 RBC의 사용은 적합치 않음</li> </ul>
의사소통 조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도확률이 거의 “0”인 수준으로 감독당국의 개입이 없어도 요구자본수준으로 회복가능한 수준임</li> <li>· 감독당국과 협의가 시작되는 기준이 되며, 보험사의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평가기준임</li> </ul>

5) 통상 타 금융권에서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요구자본(Required Capital), 지급여력금액은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으로 명명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특성에 맞게 사용하겠음

## □ 국제기구와의 조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은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분리와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
  - 두 회계원칙의 분리는 보험사의 관리부담을 가중시키며, 통일된 기준 유지시 감독당국은 회계감사로부터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 별도의 감독회계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림
  - 따라서 향후의 감독회계<sup>6)</sup>는 일반회계의 기초위에서 추가정보 및 단순한 재작업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sup>7)</sup>
- 국제감독관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의 보험계약준비금 평가, 감독체계에서 계리사의 역할, 지급여력통제수준 및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련된 작업<sup>8)</sup>은 “Solvency II”의 향후 작업에 많은 영향을 미침
- 또한 국제계리사회(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의 리스크측정방법 연구<sup>9)</sup> 역시 “Solvency II”의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의 설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6) 현재 EU는 미국처럼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보험회계지침(Insurance Account Directive(91/674/EEC)이 “감독체계”에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음

7) 국제회계기준이 감독원칙과 상당히 달라져 감독회계 작성을 위하여 방대한 양의 재작업이 필요한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음

8)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IAIS)의 “Insurance Core Principles”를 참조

9) 국제계리인회(IAA) “Insurer Solvency Assessment Working Party”의 “A Global Framework for Insurer Solvency Assessment : DRAFT, 2004. 1” 참조

### 3. Phase- I 결과 : Pillar별 개선사항

#### □ “Pillar- I : 요구자본 산출”의 개선사항

##### ○ 보험계약준비금 평가 개선사항

###### < 손해보험 >

- 감독목적상 보험계약준비금의 적립수준을 통일하기로 함(예를 들면 향후 손실액의 75% 등)
  - 이 경우 “Pillar-II(감독당국의 검사)”에서 준비금적립의 적정성 평가가 필수적임
  - 적립수준은 추후 논의하며, 평가기법 및 방법은 “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작성하기로 함
-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간주하지 않으나, EU의 감독상 손금산입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동 준비금은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함

###### < 생명보험 >

- 생명보험 보험계약준비금의 평가는 현행의 EU지침의 내용을 기본으로 함(즉, 영업보험료식 평가방법)
  - 다만, 모호한 부분(평가년도 or 발행년도<sup>10</sup>)및 할인율 설정<sup>11</sup>)과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은 추후 진행하기로 함

---

10) 발행년도방식은 보험계약 인수시점의 가정을 향후 준비금 추정시 계속 사용하는 반면, 평가년도방식은 준비금 평가시마다 가정을 바꾸어 재평가함

11) 현재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무위험수익률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현행 EU지침에서는 2가지 선택사항(시장금리 혹은 보험사의 자산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음

○ 요구자본의 이원화

- 목표자본과 최저자본으로 이원화하기로 하였으며, 두 요구자본은 보험사의 의무사항이며,
- 차별화된 감독 조치사항의 개발이 필요함

< 목표자본(Target Capital) >

- “조기경보 조치기준”으로 목표자본은 낮은 파산확률을 보장하는 경제적자본으로 정의함
  - 따라서 보험사별 특성 및 노출된 모든 리스크를 반영/계량화하여야 함
- 요구자본 산출은 EU차원의 표준방법을 사용하기로 함
  - 측정기간, 신뢰구간 및 계량화 방법 등의 통일된 기준을 설정함
  - “국제계리인회”의 작업결과를 참조로 작성하기로 함
  - 감독당국의 인증을 거치는 경우 회사 내부모형의 사용도 허락하기로 함

< 최저자본(Minimum Capital) >

- “시장참여 조치기준”으로 지급여력이 동 금액 이하인 경우 파산확률이 매우 높음
  - 감독당국의 강력한 시정조치 수단이 수반됨
- 따라서 요구자본 산출은 모호함과 주관성을 배제하여야 하므로, 단순하고 객관적인 방식이 적합함(단순한 공식기준 RBC)

## □ "Pillar-II : 감독당국 검사"의 개선사항

- 보험회사의 부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정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함
  - 우선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원칙의 제정을 통하여 보험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 내부모형의 인증기준, 보험사 현장검사(on-site inspection) 적용기준,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 작성 및 개별보험사의 특성에 맞는 검사방법을 개발하기로 함
  
- 정성평가 강화를 위한 감독당국의 권한 및 감독정책을 객관적으로 작성하며,
  - 투명한 공시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감독정책 전반에 대한 예측력을 제고하기로 함
  
- 금융의 종합화 추세에 맞추어 금융그룹의 감독방향과 금융권역별 감독주체간 역할분담에 관한 모형을 작성하기로 함

## □ "Pillar-III : 시장에 의한 통제"의 개선사항

- 감독정보에 관한 시장공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음
  - Pillar I 과 II의 상세한 내용,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감독관협의회 및 Basel II의 최종결과를 종합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함
  - 다만, 보험사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며, 보험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시제도를 구축하기로 함(즉, 감독조치사항의 단순 공시는 해당보험사를 더욱 악화시킴)